

안무저작물 이용계약약관

제정 : 2015년 5월 14일

변경 : 2015년 10월 09일

사단법인 한국안무협회

안무저작물 이용계약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저작권 대리중개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안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본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무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간에 준수해야 할 안무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사용허락조건 등 저작물 이용계약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②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③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제3조(계약의 체결)

- ① 협회의 안무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본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 등의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다만, “협회”는 “사용자”의 안무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협회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협회에 사용료를 체납중인 업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상관 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저작물 사용허락 범위 및 제한)

- ① 사용자는 협회가 사용 허락한 범위 내에서 안무저작물을 사용하여야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무저작물의 사용 권리를 제3자에게 재사용하도록 양도할 수 없다.
- ② 교습, 평생교육원 등의 허가로 안무저작물을 사용하는 무도학원에서는 협회와 저작물 등 사용계약을 통해 공연, 복제, 공중송신, 전송의 사용을 허락하며 그 범위는 국내를 포함 국외로 정한다. 다만 복제, 공중송신, 전송의 경우 유상으로 제공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중송신, 복제, 전송의 이용에 있어 국내 및 국외를 포함하여 유상으로 제공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 ④ “공연”의 경우 사용 범위는 국내로 한정하며 국외에서 사용할 경우 별도의 계약 또는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저작자명의 표시)

사용자는 안무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대리중개계약 해지자 공고)

- ① 협회와 대리중개계약을 해지한 위탁자가 있을 경우 협회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지된 저작물명과 저작자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협회와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해지된 저작물명과 저작자명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저작인격권 침해금지)

사용자는 협회에서 사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 저작자 성명 등을 변경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사용료)

- ① 사용자는 안무저작물 사용료로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협회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요율 또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안무저작물의 사용료로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허락을 받은 안무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료 납부 후 10일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경우와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던 사용자가 안무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였으나 자동이체 해지 등을 하지 않아 사용료가 잘못 납부되어 안무저작물 사용중지 후 60일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연체가산금)

사용자는 협회와 합의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를 가산하여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후부터 매 1개월마다 1.2%의 증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 ① 협회 또는 사용자는 그 상대방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 ③ 사용자는 협회로부터 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의 안무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 후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관할법원)

협회와 사용자 간에 법률적인 대립이 발생할 경우의 관할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1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09)

본 약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